

# 김만덕국제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 2024.12.11.(수) 16:00
- ❖ 김만덕기념관 세미나실



## 목 차

<b>발표문 1</b>	<b>김만덕국제상 위상 제고 방안</b> ..... 3 예종석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한양대학교 명예교수)
<b>발표문 2</b>	<b>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그리고 특성</b> ..... 9 정호기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우석대학교)
<b>토론문 1</b>	<b>김만덕상 운영 방안</b> ..... 21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관광학 박사)
<b>토론문 2</b>	<b>김만덕국제상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b> ..... 27 오수용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b>토론문 3</b>	<b>김만덕상의 도민공감대와 시상 대상, 수상자 선정</b> ..... 31 진선희 (한라일보 기자)
<b>※</b>	<b>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b> ..... 37



발표문 1

# 김만덕국제상 위상 제고방안

예 종 석

---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김만덕국제상 위상 제고방안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2024.12.11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전부개정) 2024-08-02 조례 제 3779호

### ‘김만덕국제상’ 신설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2조(시상부문)

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3조(시상인원)

2. 김만덕국제상: 1명

상의 제정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 상은 권위로 먹고 산다



### 노벨평화상

주 최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개최 원년 : 1901년  
개최 시기 : 매년 12월 10일(노벨 사망일)  
개최 장소 : 노르웨이 오슬로  
상 금 : 1100만 크로나(약14억 3천만원), 금메달, 상장



### 서울평화상

주 최 :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개최 원년 : 1990년  
개최 시기 : 매 2년마다 시상  
개최 장소 : 대한민국  
상 금 : 20만 달러(약2억 8천만원), 상장 및 상패

## 권위는 어떻게 세우나?

지명도

관심도

수상자의 업적



심사의  
공정성, 권위

상금

상의 운영 주체



### 세계의 권위 있는 상

#### 플리처상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음악상으로, 1911년 사망한 저널리스트 조셉 플리처의 유언에 의해 1917년 제정되었다.

#### 프리츠커상

매년 건축 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결합을 보여주어 인류와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 건축가에서 상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한다.

#### 아카데미상

미국 영화업자와 미국 내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협회에서 심사해 수여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으로, 오스카상이라고도 한다.

#### 그라미 어워드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매년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에 수여하는 상으로, 미국의 음악상 중 제일의 규모와 권위를 가진 상이다.

#### 노벨문학상

노벨상 6개 분야 중 하나로 이상적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 뛰어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공쿠르상

프랑스의 작가 에드몽 공쿠르의 유언에 따라 1903년에 제정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다.

### 세계의 권위 있는 상

#### 부커상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으로,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다. 작가의 국적과 상관없이 영국에서 출간된 영문 소설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 아벨상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수학자 아벨을 기념해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수학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뛰어난 업적을 낸 수학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 필즈 메달

수학의 새로운 분야 개척에 공헌한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상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

#### 울프상

이스라엘의 울프재단이 1978년 제정한 상으로, 인류의 이익과 우호 관계 증진에 이바지한 과학자·예술가를 선정하여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사하로프 인권상

EU(유럽연합)가 인권과 자유 수호에 커다란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88년 12월 소련의 핵물리학자이자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 막사이사이상

필리핀 전 대통령 라몬 막사이사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막사이사이의 생일인 8월 31일에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시작이 중요하다  
만덕 할망께 영광을!

발표문 2

# 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그리고 특성

정 호 기

---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  
우석대학교



## 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그리고 특성

정 호 기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우석대학교)

### 1 들어가며

#### □ 서훈을 위한 법률과 제도화

- 예로부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기 위해 서훈(敍勳)이 시행됨
  - 서훈은 법률과 제도에 의거 이루어졌고,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 오늘에 이룸
- 국가는 근대에 들어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인해 훈포장에 명예를 담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며, 국가적 가치를 통합 및 제시함<sup>1)</sup>
  - 훈포장 수여는 금전적 보상 측면보다는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공인과 이를 사회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 존경과 명예를 드높이고 추동하는 데 목표를 둠
  - 훈포장은 상황에 따라 승진 근거나 지표로 활용되고, 금전적 예우가 수반됨
- 반면, 훈포장 제도가 악용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 불명예로 재평가되는 경우도 발생
  - 12·12군사정변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투입되었던 군부 인사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1980. 6. 20.)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서훈은 법률에 기반을 두었고, 행정안전부는 이에 근거해 운영
  - 한국에서는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 「상훈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10회 개정하여 현재는 법률 제16765호에 의거 운영됨

#### □ 포상(褒賞) 주체의 다양성

- 서훈을 위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주체는 국가이지만, ‘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여 주체가 다양
  - 즉, 국가 이외에 민간 부문에서도 다종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각종 법인, 사회단체, 기업 혹은 학술단체 등이 포상 주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음

1) 이철호(2021), 『훈장의 법사회학』, 21세기사, 15~24쪽.

-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포상도 공적인 성격과 의미를 부여받지만, 국가가 수여하는 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움
- 포상의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포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공공성을 통해 발현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역점을 둠
  - 따라서 포상 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운영에 필요한 질서와 방향을 선양하고 격려하며 추동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

## □ 과거사 청산 혹은 바로잡기<sup>2)</sup>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을 제정하고 포상

- 국가 서훈에서 이전과 차별성이 큰 사례를 든다면, 과거사 관련 훈포장임
  -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민주주의 발전유공 정부포상’를 실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에게 정부포상으로 그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민주화운동정신을 확산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증진” 한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유공’ 정부포상을 추진함. 민주주의 발전유공 정부포상은 현 정부 1년 차에는 실시되었으나, 2023년부터 중단됨
  - 민주주의 발전유공 정부포상이 아닌 개별서훈은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 개별서훈은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가 현직에서 퇴임하거나 사망한 시점에 종종 이루어짐
- 국가 서훈이 아닌 과거사 관련 기관과 단체 등도 상을 제정하고 수여하고 있음
  - 과거사 관련 사회단체와 재단 등이 제정한 상은 10여 개 이상으로 파악됨.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상을 제정하고 수여하는 단체는 5·18기념재단임
  - 5·18기념재단은 2024년 현재 4개의 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sup>3)</sup>
    - **광주인권상** : 5·18민주화운동유족회가 1991년 전국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5·18시민상’과 윤상원 열사의 추모사업을 주관한 인사들과 유가족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하던 ‘윤상원상’을 통합해 2000년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여. 2011년에 특별상을 신설하고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에게 격년으로 수여
    - **5·18언론상** :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함께 “신군부의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선양하고 언론정신의 맥을 잇고자” 2007년에 ‘5·18언론상’을 제정하여 공동주관
    - **5·18문학상** :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과 함께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 발굴을 통한 오월문학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에 ‘5·18문학상’을 제정해 수상

2) 프라실라 B. 헤이너 저. 주혜경 역. 안병욱 해제.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9-11쪽.

3)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s://www.518.org/base/main/view>).

- **힌트페터 국제보도상** :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함께 해외 각지의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하는 영상 기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2021년에 제정 수상
-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2008년에 ‘노근리 평화상’을 제정하여 인권상, 언론상, 문학상, 특별상을 수상<sup>4)</sup>
-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2022~2023년에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문학상을 시상했으나, 상의 훈격을 높이고 화합 및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두 상을 통합함. 전라남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을 수여하기 시작

## 2

### 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 2-1. 제주4·3평화상의 제정

##### □ 평화상의 제정 근거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주4·3평화상 규정」

##### □ 평화상의 제정 목적과 상의 명칭

- 「제주4·3평화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4·3의 진상규명과 화해 과정에서 발현된 평화·인권·민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상을 제정하고 그 시상에 관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4·3평화상 규정」 2014년 6월 20일 제정(이문교 이사장 재임기)되어 총 8회 개정
  - 2015년부터 총 5회의 수상자를 선정했고, 2025년 6회 수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
- 「제주4·3평화상 규정」 제2조(상의 명칭)에서 상의 종류를 3가지로 규정
  - 제주4·3평화상(이하 평화상), 제주4·3특별상(이하 특별상), 제주4·3공로상(이하 공로상)
  - 평화상과 특별상은 2년 격년제로, 공로상은 70주년을 시작으로 10년 기간으로 수상

4) 「한겨레」, 2024. 10. 2., “17회 노근리평화상 인권상에 한베평화재단.”

- 평화상과 특별상은 각 1명(단체)으로 하고, 공로상은 5인(단체) 이상으로 선정
- 평화상 상금은 미화 5만 불, 특별상 상금은 미화 1만 불, 공로상은 한화 1,500만 원

## 2-2. 제주4·3평화상위원회의 운영

### □ 평화상 추진 기구와 운영

- 「제주4·3평화상 규정」에 의거 심의 위원회를 복심제로 구성 운영
  - 제주4·3평화상위원회(이하 평화상위원회) : 수상자 선정
  - 제주4·3평화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수상 후보자 발굴, 조사, 3배수 추천
- 평화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
  - 평화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 평화상위원회 위원은 평화재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평화상위원회에서 선출
  - 평화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 평화상위원회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평화재단 사무처장(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겸직
-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은 2년을 임기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 개정 이전 규정은 4년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음
  - 실무위원회 위원은 평화재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
  - 평화상이 2년 단위로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1회 수상 후보자를 추천
  -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재단 담당팀장
  - 실무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심사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음

### □ 평화상 후보자 추천과 선정 절차

- 1단계 : 실무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 발굴과 조사 및 추천
  - 실무위원회는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군과 새롭게 추천 및 파악한 대상자들을 검토
  - 후보자 추천권은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있음. 그러므로 실무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과정을 이행하는 위원의 위촉을 넘어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 평화상은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은 후보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후보자 추천권은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있음

- 실무위원회는 평화상과 특별상의 성격과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선정 방법과 절차 등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전반을 협의하고 추천 계획을 확정
- 2단계 : 실무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과 심의
  -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은 같고, 상의 명칭만 달리 표기
  -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추천서에 적시할 항목과 내용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위원들의 요청에 의거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정 및 변경 가능
  - 2025년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추천서의 항목과 내용 : (1) 인적사항, (2)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여도(상징성, 영향, 지속성, 희생성, 주도성 등), (3) 4·3정신 계승 기여도, (4) 명망성·대중성·인지도, (5) 시의성, (6) 평화상 위상 및 역할 제고, (7) 수상 경력, (8) 주요 경력 및 업적, (9) 주요활동 시기 및 분야, (10) 공적 사항, (11) 종합평가
  - 추천서 분량은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후보자 1인당 A4 4-6쪽 분량으로 작성
- 3단계 : 평화상위원회에서 최종 1인을 선정

### 2-3. 제주4·3평화상위원회의 성과

□ 평화상과 특별상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

제주4·3평화상			
구분	수상자	약력	국적
1회 (2015)	김석범	◦ 소설가, 최초의 4·3소설 《까마귀의 죽음》 발표(1957) ◦ 4·3대하소설 《화산도》 발표(1976~1998)	재일 제주인
2회 (2017)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 미국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전쟁의 기원 1, 2》 발표(1981, 1990)	미국
3회 (2019)	현기영	◦ 소설가, 소설 《순이삼촌》(1978) 발표 ◦ 제주4·3연구소 초대 소장 및 이사장(1989~2004)	제주
4회 (2021)	댄 스미스 (Dan Smith)	◦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2015~현재) ◦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1993~2001)	영국
5회 (2023)	개렛 에반스 ( Gareth Evans)	◦ 호주 국립대 명예교수 ◦ 전 호주 외교부장관	호주

제주4·3평화상 특별상			
구분	수상자	약력	국적
1회 (2015)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 (Muhammad Imam Azi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운동가</li> <li>◦ 인도네시아 1966년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화해 운동 주도</li> <li>◦ 인도네시아 2000년 학살사건의 가해집단인 NU (나들라툴 올라마) 회원가입 후 가해단체 설득 및 피해자 사과 주도</li> </ul>	인도네시아
2회 (2017)	수상자 없음		
3회 (2019)	응우옌티탄 (Nguyen Thi Th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운동가</li> <li>◦ 1968년 베트남 하미마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 이자 학살 현장 생존자</li> </ul>	베트남 (공동수상)
	응우옌티탄 (Nguyen Thi Th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운동가</li> <li>◦ 1968년 베트남 풍니퐁넛마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이자 학살 현장 생존자</li> </ul>	
4회 (2021)	제주4·3한라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결성된 '제주43사건을 배우고 함께 행동하는 모임(회장 우미세도 유타카)</li> <li>◦ 43추념식 참석, 유적지 기행, &lt;제주43&gt; 회지 발간</li> <li>◦ 43행방불명희생자 위령제(대마도-제주) 봉행</li> </ul>	일본
5회 (2023)	강요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가, 제12대 민족미술인협회 회장</li> <li>◦ 43연작, 동백꽃지다 작가</li> </ul>	대한민국 제주

□ 특별공로상은 2018년 4월 제주4·3 제70주년에 맞춰 1회 수상

제주4·3특별공로상			
구분	수상자	약력	국적
1	고이삼(개인)	- 4·3출판운동(일본신간사)	일본
2	김명식(개인)	- 4·3진상규명과 연구에 공헌,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	대한민국
3	제주4·3연구소(단체)	- 1980년대 이후 제주 최초의 43연구단체 - 43진상규명운동의 뿌리	대한민국
4	양동윤(개인)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43수형인 피해조사, 43문제해결 등 시민운동	대한민국
5	놀이패한라산(단체)	- 4·3문화예술 공연(헛묘, 백조일손, 사월 등)	대한민국

## □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평화상, 특별상 위원회 위원 위촉과 구성은 평화재단 이사장의 권한
  - 평화재단 이사장은 관련 단체와 부문 등을 대상으로 평판과 경력 등을 탐문 및 확인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
  - 위원회는 수상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 이후 진행 절차는 위원장의 주도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사를 수렴 및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
- 평화상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마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 후 활동을 종료
  - 실무위원회는 기존 위원과 신임 위원을 적절히 안배해 위촉함으로써 연속성을 유지
  - 위원은 거주지와 주요 활동 지역으로 보면, 제주와 이외 인사를 적절히 고려해 위촉
  -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명망, 활동 분야 등을 고찰하여 위촉하며, 공무원과 제주4·3의 피해자단체 등을 위촉한 전례는 없음
  - 위원회의 위원은 시상식에서 배포하는 책자를 통해 공개
- 위원회 운영과 수상자 선정 과정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정과 유사한 과정
  - 평화상과 특별상은 위원을 달리하는 구조와 권한으로 검증과 조사를 거치면서 문제점과 예측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침.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에는 3배수 후보자들을 선정하기까지 평균적으로 4-5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평화상위원회는 1-2회의 개최를 개최
  - 평화상위원회가 3배수 추천 후보자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방식을 배제하고 있음

## □ 수상자 선정 과정과 구조

-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평화재단과 독립적으로 운영
  - 평화재단은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와 수상자 선정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회의와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
  - 평화재단은 수상 후보자 선정과 최종 후보자 결정에 의견이나 입장을 내지 않음

- 평화상과 특별상의 수상 후보자 선정 기준
  - 후보자의 활동 공적과 개인 품격, 신상 등을 고려하며, 수상 이후 활동이 「제주4·3평화상 규정」을 제정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
  - 수상자에 대한 시시비비, 국가 간 외교적 문제, 향후 활동의 안정성 등 여러 기준과 조건을 검토하면서 선정
  - 평화상과 특별상의 성격 차이와 특성의 설정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며, 다음 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를 이행할 당위성은 없음
- 수상자는 제주4·3평화상위원회
  - 시상은 제주4·3평화상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짐. 평화재단은 수상자 시상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

#### □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과 대상자 선정

-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추천서 작성 양식에 맞춰서 직접 작성
  -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각 1인 이상을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고 제출
  - 위원에 따라서는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 각 1인을 모두 추천하지 않기도 하고, 한 영역에 집중해서 작성하기도 하며, 1인 이하를 추천하기도 하는 등 자율적인 판단과 선정이 보장되어 있음
- 평화상과 특별상 수상후보자 선정
  -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이 제출한 추천서를 상호 검토 및 파악
  - 실무위원회는 회의에서 추천서 작성 위원이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하여 평화상과 특별상 후보자로 3배수를 선정
  - 평화재단은 실무위원회에서 3배수로 선정한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추천서를 보완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평화재단은 수정과 보완할 사항이 확인될 시 추천서 작성 위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 절차를 후속
- 추천서의 검증과 현장 평판 조회 등을 후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진 바는 없음

#### □ 평화상과 특별상 수상자 선정

- 평화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최종 1인을 선정
  - 평화상위원회는 실무위원장으로부터 추천 후보자 3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
  - 평화상위원회는 평화상과 특별상 최종 1인을 선정할 때까지 토론과 합의를 진행

- 평화재단은 평화상위원회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
  - 평화재단은 선정자에게 연락하고 수락 여부, 시상식 참석 여부를 협의
  - 평화재단은 선정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다시 확인
  - 평화재단은 시상식 일정을 협의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
- 특별상 수상자는 다음에 평화상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4

## 맺음말

과거사와 관련한 시상은 다양한 주제로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포상은 이행기 정의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사 관련 시상이 항상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며, 예기하지 못한 일로 인해 수상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이 2004년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에게 인권상을 수상했으나, 2018년에 철회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상 수상에 대해 관련 국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관련 단체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과거사 관련 시상에서 제주4·3평화상은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지대한 편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5·18민주화운동에서 수상이 먼저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성격의 포상으로 광주인권상, 노근리평화상, 서울평화상, 6월민주상, 오키나와 평화상 등이 있다. 명망과 영향력 등에서 볼 때, 제주4·3평화상의 위상과 영향력은 수상 회수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보수단체와 회원들이 제주4·3평화상 수상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행정자치부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4·3평화상 수상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sup>5)</sup> 심지어 정부는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의 방한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sup>6)</sup>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제주4·3평화상의 필요성과 의미를 더욱 입증하고 고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회적 논란이 없이 높은 공감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포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포상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위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평화상과 특별상 수상의 첫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절차나 추천권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상시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는다. 추천받은 사람들은 후보군으로 분류하여

5) 「제주CBS」, 2015. 4. 15., “정부, 제주4·3평화상 표적 감사 논란.”

6) 「제주CBS」, 2015. 10. 14., “4·3평화상 수상자 소설가 김석범 씨 방한 거부당해.”

관리하지만, 실제 추천 여부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다.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이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 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3배수 후보자의 추천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평화상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토론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상과 특별상 수상자 선정의 특징은 단심제가 아니라, 몇 단계를 걸쳐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는 실무위원회와 평화상위원회이다. 두 위원회 위원은 평화재단 이사장이 위촉하지만, 수상 후보자 추천과 수상자 선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평화재단은 두 위원회의 진행과 수상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후보자와 수상자 선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성명이 공개되고, 그 과정과 결과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다고 한계와 과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평화상의 신규 후보군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고,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상 후보자의 경우 제주4·3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기술하기가 어려운 일이며, 예상 범위 밖의 문제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실하게 발견하고 배제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있다. 유사한 성격의 상들과 차별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는 일도 숙제이다. 평화상 시상식의 의미와 효과를 더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일도 한층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토론문 1

# 김만덕상 운영 방안

김 석 윤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관광학 박사



# 김만덕상 운영 방안 토론편

김 석 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관광학 박사)

## 〈문제 제기〉

- 조례에 제시된 목적의 나눔, 배움, 도전, 창조가 김만덕 정신을 세계시민과 공감하기 위한 보편적인 추구 가치로 적당한지를 판단하고 집약시킬 필요가 있음
- 관련해서 상의 명칭도 역사성을 담보하면서 세계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현재 조례의 추천 방식은 행정 및 관련 기관 추천과 연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거나 시상후보자의 활동 공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엿보임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의 2개 시상 분야(국내, 국제)는 추진 절차가 다를 수 있음, 현실적인 절차를 고려한 운영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위원의 구성 또한 국제상의 품격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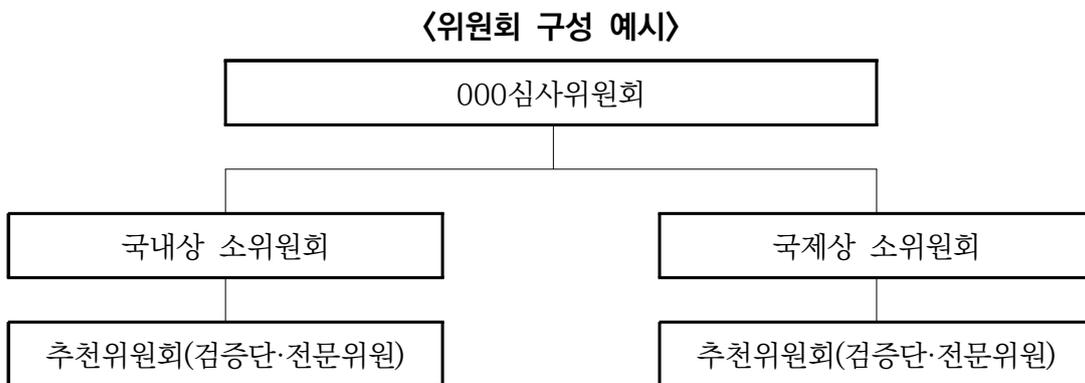
## 1. 시상 부문과 국제상의 명칭

- 현재의 시상은 2개 분야(봉사, 경제)로 구분, 개정된 조례처럼 김만덕상 1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김만덕국제상 명칭은 국제상을 제정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맞는 용어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음, 세계인의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름을 상의 명칭으로 활용한 국내 사례는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이 있음, 이는 그가 기자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내외 기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오히려 상의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장점이 있음
- 국내상의 경우 신사임당상은 시상자가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삶과 행적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의 취지를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음

- 김만덕 상은 국내와 국외 모두 동일한 이름 중심의 상으로 가는 게 적합한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지금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 지역적 관점에서 김만덕을 강조하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지, 아니면 세계시민 관점에서 고유 가치를 추출하고 보편적 용어로 정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 위원회 구성

- 추천 방식이나 선정 절차와 연관된 분야로 지금처럼 국내 각계 전문가를 1년 이내(해당년도)로 위촉 운영하는 방식은 국내상과 국제상의 추진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무엇보다 국제상의 경우 조사와 검증 등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예비 후보자들이 공간적으로 해외 거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1년을 넘길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소 2년 임기로 위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기에 전체 위원회 밑으로 국제상과 국내상 2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시상은 국내상 매년, 국제상 격년으로 추진 검토)



## 3. 추천 방식

- ① 현재 관련 단체나 역대 수상자, 행정 등이 시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국내의 유사한 시상 관련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② 반면에 제주4·3평화상처럼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는 방식

- ③ 광주인권상처럼 일반적인 추천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국제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실사 등 충실한 검증을 시행)
- ①번 방식은 행정 중심으로 빠르게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 ②번 방식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며, ③번 안은 ②번 방식에다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한 수준
- 선행사례는 발굴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국제상의 경우 추천권과 심사 권한을 분리,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시상자의 공적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예산)

### 〈추진체계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추천 대상자 1차공적 조사 검증	▶ 예비 대상자 선정 (3배수) ▶ 2차 현지 검증	▶ 선정
▶ 추천위원회 ▶ 연서 추천	▶ 추천위원회	▶ 추천위원회 ▶ 검증단(전문위원)	▶ 심사위원회

## 4. 시상금

- 시상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상의 권위에 맞게 시상금을 지급, 수상자를 예우하는 측면과 아울러 잠재적 시상 대상자의 관심을 불러냄으로써 김만덕의 삶과 추구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음
- 4·3평화상의 상금은 미화 5만 불, 특별상의 상금은 미화 1만 불로 하고 은행 예치 보증서로 시상하며, 광주인권상도 미화 5만 불을 상금으로 책정하고 있음

## 5. 추진 주체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이나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앞서 살펴본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주관 등 선정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와 심사 등의 업무가 연중 이루어진다면 추후 관련 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므로 이 또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음

## 6. 시상 시기

- 예산, 검증 등의 절차를 고려해서 매년 혹은 격년 방식을 채택



토론문 2

# 김만덕국제상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

오 수 용

---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 김만덕 국제상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

오 수 용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전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 1. 김만덕 국제상이 나아갈 길: 두 개의 options

- 1) Option 1 - 선양 : 김만덕의 명성 권위를 널리 떨치게 함.
- 2) Option 2 - 계승 발전 :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을 기초로.

## 2. 세계사속 시대정신. MDGs

- 2000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여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개최.
-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 목표)를 설정.
- 새천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등에 대한 결의를 다짐.

## 3. 김만덕 정신은 무엇인가?

- 1) 나눔과 자선 (Sharing and Charity)
- 2) 빈곤 타파 (Eradication of Poverty)

## 4. NGOs, 김만덕재단

- 1) Advocacy NGOs와 Development NGOs
- 2) 김만덕재단의 위상

## 5. 김만덕 국제상 제정의 의미

- 1) 김만덕 정신 현대적 해석
- 2) 김만덕 기념사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 6. 김만덕 국제상의 제정 및 운용 관련 고려할 점 몇가지

- 1) 시간적 제한 탈피: 조선시대 or 20세기적 발상 탈피
- 2) 공간적 제약 극복: 대한민국 or 제주도적 한계 설정 극복
- 3) Gender 관점(여성)의 문제
- 4) 시야의 확장  
    김만덕 정신의 국제화 vs 제주도·김만덕재단의 발전

## 7. 수상자 선정의 문제

- 1) 선정 mechanism
- 2) 후보자 선정 방식: 추천 or 발굴

토론문 3

# 김만덕상의 도민공감대와 시상 대상, 수상자 선정

진 선 희

---

한라일보 기자



# 김만덕상의 도민공감대와 시상 대상, 수상자 선정

진 선 희

(한라일보 기자)

## 1. 김만덕상, 도민 공감대 얼마나

### 1) 김만덕상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은

- 김만덕에 대한 조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짐. 조선 시대 굶주린 제주 사람들을 구휼했던 여성 자선가→시대와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CEO
- 2007년쯤부터 화폐 인물(5만 원)로 등재하려는 지역 사회의 운동과 맞물려 김만덕의 진취성이 부각되고 관련 저서, 콘텐츠도 여성 봉사자가 아닌 리더의 측면에 주목
- 이 같은 변화가 김만덕상 수상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 봉사, 경제 부문 인으로 나뉘었으나 이 역시 나눔, 베품 실천에 초점. 경제인 부문도 이웃, 사회 환원에 방점
- 지역 여성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여성계조차 무관심. 수상자의 소감 발표 기회가 따로 없는데다 지역 언론의 수상자 인터뷰도 2000년대 이후엔 보기 어려움
- 지역 사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김만덕상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거의 없었음. 권위 있는 상이 되려면 김만덕상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돼야

### 2) 김만덕상 수상자들의 스토리 실종

- 1회(1980)~26회(2005)는 1명씩 26명. 27회(2006)부터 45회(2024)까지는 봉사 부문, 경제인 부문으로 나뉘 33명
- 1회 고수선을 시작으로 역대 수상자의 면면은? 수상자 1인(또는 2인)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상인데도 수상자에 대한 화제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탐라문화제 주최 측이 탐라문화제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에도 만덕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편. 만덕제의 도민 축제화 제고 방안 필요
- 김만덕상 수상자 DB 구축 관련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수상자 명단만 게시.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 '의인 김만덕' 코너는 인터뷰 등 상세 자료 20회(1999년)까지 게재. 21회(2000년)부터는 짤막한 경력 소개 위주.

## 2.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 1) 김만덕상 봉사 부문, 경제인 부문→김만덕상, 김만덕국제상 차별점은

- 이전 조례의 봉사, 경제인 부문 후보자도 국내외 거주 여성으로 명시.
- 김만덕상, 김만덕국제상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 봉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상자를 발굴해야 할 것임
- 이는 개정 조례 제2조 '시상 부문'은 기존 봉사,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5조 '시상'에서는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제시한 점이 근거가 될 수 있음
- 김만덕상 소관 부서가 최근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으로 바뀐 점도 주목. 성평등 정책관이란 부서를 두고 있는 제주도와 진취적 제주 여성의 상징성 살린 김만덕상 수상자 발굴 필요

### 2) 김만덕상은 여성, 김만덕국제상은 성별 구분 없이 시상하는 방안

- 김만덕상은 조선 시대 제주 여성 인물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성으로 제한할 필요 있음.
- 김만덕국제상은 남·여, 개인·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김만덕상의 시상 취지를 국제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봄
- 다만, 현 김만덕상 개정 조례 전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제시됐던 김만덕상, 김만덕특별상으로 명칭 재검토 필요. 김만덕상은 국내외 거주 여성 1명, 김만덕특별상은 여성 외에 남성, 단체에 시상하는 안

## 3.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 1) 공고에서 선정,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 2024년 기준 5월 22일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공고→ 8월 30일까지 접수→ 9월 중 서류 검토→후보자 인터뷰(9월 24일, 필요시 대면 인터뷰 가능)→10월 중 심사위원회 개최→ 10월 8일 수상자 발표
-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실제 한 달 남짓. 교차 검증 등 공적 내용을 파악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 1991년 시작된 삼성호암상 사례.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특별상 부문 시상  
매년 6월 1일 삼성호암상 시상 공고를 기점으로 후보자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회회, 수상자 발표, 시상식까지 1년 소요. 홈페이지에는 그해 심사위원(특별상 제외) 명단(부문별 7~8명씩)과 해외 자문위원 명단 약 60명 공개

## 2) 누가 선정할 것인가

- 조례 근거로 후보자 추천 후 매해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15명 이내) 운영하되 '김만덕상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
- 이는 조례 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에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에 근거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
- 추천인은 역대 심사위원, 시상 분야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전문성 가진 개인 추가 필요. 운영위원회 가동 시 운영위원도 추천 가능. 온라인 접수 방식도 도입

## 참고문헌

김석윤,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검토」,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7  
문순덕,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 2010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탐라문화제 50년』, 2014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http://www.mandukmuseum.or.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jeju.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https://www.elis.go.kr/>)  
호암재단 홈페이지(<https://www.hoamfoundation.org/>)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정) 2007-04-04 조례 제 223호

(전부개정) 2011-10-12 조례 제 793호

(일부개정) 2017-06-02 조례 제 1866호

(일부개정) 2022-06-30 조례 제 3178호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4-08-02 조례 제 37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 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1명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군수·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시상 금지)** 도지사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만덕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